제275회	구미시의회	임시회
회	계	과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: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구미 육상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(체육진흥과)

기초지자체 최초로 '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' 유치 성공과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사계절 전천후 육상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력 확보를 위해 시설 조성

○ 구미먹거리허브 조성(유통특작과)

2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먹거리 가치를 공유하고 구미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공유매장, 시민 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거점시설로써 구미먹거리허브를 건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구미 육상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사업

O 위 치 : 구미시 광평동 216번지 일원(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)

O 대 상 : 연면적 13,994㎡(에어돔 13,000 부대시설 994)

○ 사업기간 : 2024 ~ 2025년

○ 총사업비 : 15,000백만원(기금 5,000 도비 3,000 시비 7,000)

※ 사업비 산출내역 : 공사비 13,650백만원

설계비 450백만원

감리비 150백만원

부대비 750백만원

O 기준가격 : 15,000백만원

• 건 물 : 15,000백만원(총사업비)

O 주요시설: 에어돔(13,000㎡ - 축구장, 육상트랙)

부대시설(994㎡ - 탈의실, 휴게실, 화장실, 공조실 등)

O 추진현황

• 타당성 조사 용역 : '23. 5월~'24. 3월

•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 : '23. 11~12월

• 공모사업 신청 및 공유재산심의 : '24. 1월

• 공모사업 최종 선정 : '24. 3월

O 향후 추진계획

•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: '24. 4월

경상북도 투자심사
 : '24. 4~6월

•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: '24. 4~7월

설계용역 공모 실시설계용역시행 : '24. 7~12월

• 공사착공 : '25. 3월

• 공사준공 : '25. 12월

□ 구미먹거리허브 조성

○ 위 치 : 사곡동 662-1(구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)

O 대 상: 건물 1개동 지상 3층

• 건축면적 : 311.00㎡(연면적 : 624.00㎡)

○ 사업기간 : 2024 ~ 2025년

○ 총사업비 : 3,402백만원(국 2,381.4, 시 1,020.6)

※ 사업비 산출내역 : 공사비(건축·전기·소방 등) 3,242백만원

설계비 160백만원

○ 기준가격 : 건물 3,402백만원(총사업비)

O 주요시설: (1층) 먹거리 공유매장 (2층) 추진단 사무실, 공유부엌

(3층) 공유사무실, 창고 등

O 추진현황

• '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 : '21. 9월

•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: '22. 4월

•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: '23. 12월

• 공공시설 설계용역 및 공사의뢰(공공시설과): '24. 1월

•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: '24. 1월

•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: '24. 1월

•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: '24. 3월

O 향후 추진계획

설계용역 공모
 : '24. 4~5월

설계용역: '24. 6월

• 공사시행 : '24. 11월~'25. 6월

3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O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m², 백만원)

	구 분		구 분		구 분 건 수		수 량	금 액
	계		2	14,618	18,402		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
취득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2	14,618	18,402			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m²,백만원)

구분		재산의 표시		추정가액	취득	사 유	재산	비고
丁七	재산구분	소 재 지	수량(m²)	十3/14	시기	사 유	소유자	비끄
계			14,618	18,402				
취득	/ / 	광평동 216번지일원 (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)	13,994	15,000	2025년	구미 육상전지 훈련장(에어돔)조성	구미시	신축
"	"	사곡동 662-1	624	3,402	2025년	구미먹거리허브 조성	"	"

<u>위 치 도</u>

□ 구미 육상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

○ 소재지 : 구미시 광평동 216번지 일원(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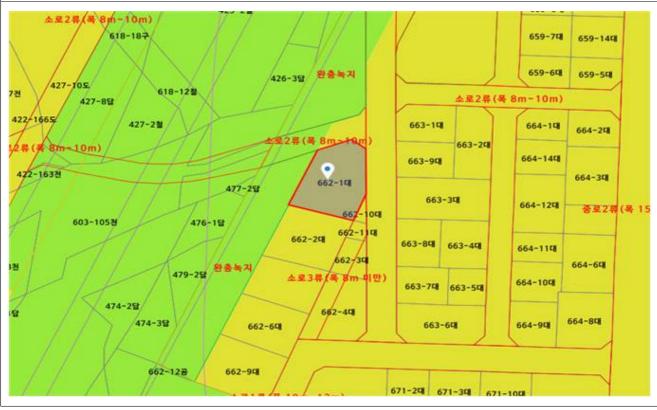




□ 구미먹거리허브 조성

○ 소재지 : 구미시 사곡동 662-1번지



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 비용추계서 (구미육상 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)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재정수반요인
 - 구미육상 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- ○에어돔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 유사사례를 검토한 평균단가 및 에어돔 조성 업체 공종비율 사례 적용
 -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의 체육지원시설 공종별 평균값 적용하여 책정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합계
	• 공사비	1,403	12,251	13,654
세출	• 설계 및 감리비	597	_	597
개호	• 부대비 및 기타	_	749	749
	계	2,000	13,000	15,000

4. 재워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합계
국비	2,000	3,000	5,000
도 비	_	3,000	3,000
시비		7,000	7,000
민 간	_	_	_
기타	_	_	_
합 계	2,000	13,000	15,000

주) 국비 :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지훈련 특화시설(에어돔) 설치·지원 사업 공모 선정

5. 부대의견

- 육상선진도시 구미로의 도약과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미육상 전지훈련장(에어돔) 조성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6. 작성자 :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조성팀 이덕수(054-480-5022)

(단위:억원)

	구 분	금 액	산출내역
,	총 계	150	
	소 계	136	
공 사 비	건축	136	□ 에어돔 공사비: 에어돔 공모 선정 유사사례 사업비 평균단가 68만원/㎡ × 에어돔 조성면적 13,000㎡ + 구조보강비 12억원 = 100.5억원 ※ 에어돔 공모 선정 유사사례 사업비 단가 적용 ▶ 에어돔 공모 선정 유사사례 사업비 : 68만원/㎡ ※ 3개 선행사례(춘천, 경주, 창원)에 평균가액 적용 - 춘천시 송암동 에어돔 = 61만원/㎡ - 경주시 스마트 에어돔 = 81만원/㎡ - 창원시 에어돔 = 63만원/㎡ ▶ 최근 에어돔 조성 사례 - 경주시 스마트 에어돔: 10,752㎡×995천원/㎡ = 107억원 - 춘천시 송암동 에어돔: 11,990㎡×834천원/㎡ = 100억원 □ 지원시설 공사비:유사사례 사업비 평균단가 339만원/㎡ × 지원시설 연면적 994㎡ + 기타비용 = 36.0억원 ※ 서울시 『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』공사비 적용 ▶ 공종별 공사비 - 건축: 36억×65.0% = 23억원 - 기계: 89억×13.4% = 4억원 - 전기: 89억×9.3% = 4억원 - 통신: 89억×1.9% = 1억원 - 소방: 89억×4.5% = 1억원 - 도목/조경: 4.8%×4.8% = 3억원
설 계	소 계	6	
및	설계비	5	□ 건설 공사비 × 건축설계 대가요율 3.38% = 4.5억원
감 리 비	감리비	1	□ 건설 공사비 × 건축감리 대가요율 1.03% = 1.4억원
	소계	8	
부대비	시설 부대비	1	□ 건설 공사비 × 시설경비요율 0.33% = 0.4억원
时	기타시설 구입비	7	□ 건설 공사비 × 5% = 7억원 ※ 하이브리드잔디 시공, 스포츠과학센터 내 시설비용 포함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 비용추계서 (구미먹거리허브 조성)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재정수반요인
 - ㅇ 구미먹거리허브 조성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-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안)」에 의거하여 각 시설별 공사를 적용하여 책정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• 공사비	1,486	1,756				3,242
세출	• 설계비	160					160
	계	1,646	1,756				3,402

4. 재워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1,152	1,229				2,381
도 비						
시비	494	527				1,021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1,646	1,756				3,402

5. 부대의견 : 구미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가치를 확산시킬 시민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써 신속히 조성되어야할 시설임

6. 작성자 : 유통특작과 먹거리정책팀 신유리(054-480-5922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3	구 분	금 액	산출내역
ž	총 계	3,402	
	소 계	3,242	
줘	건설 공사비	2,683	 □ 연면적 624㎡ × 4,095천원/㎡ = 2,555백만원 □ 제로에너지 공사비 상승률 2,555백만원 × 5% = 128백만원 ※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서울특별시, 2022) 참고 ▶ 공종별 공사비 - 건축 : 2,683백만원×70% = 1,878백만원 - 토목 : 2,683백만원×8% = 214백만원 - 전기 : 2,683백만원×11.5% = 309백만원 - 통신 : 2,683백만원×4.5% = 121백만원 - 소방 : 2,683백만원×6% = 161백만원
사 비	철거비	40	□ 기존시설 철거(석면 포함) 439.9㎡ × 90천원/㎡ = 40백만원
	감리비	32	□ 건설 공사비 2,683백만원 × 1.19% = 32백만원※『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』제2종(보통) 적용
	부대비	89	□ 현황 측량 및 인증비 × 1식 = 89백만원
	예비비	318	□ 예비비 × 1식 = 318백만원 ※ 총사업비 관리지침(기획재정부지침 2017.1.1.) 및 건축기획 비용추정에서의 예비비와 설계조정(대한건축학회 2002.04) 기준 사업비의 10% 이내로 산정
	내부 설비비	80	□ 내부 기자재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비 × 1식 = 80백만원
	소 계	160	
설 계	설계 공모비	16	□ 설계공모비 × 1식 = 16백만원
別	설계비	144	 □ 건설공사비(vat 제외) 2,439백만원 × 대가요율 4.61% = 112백만원 □ BF인증비 및 손해배상공제 × 1식 = 32백만원 ※『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』제2종(보통), 도서의 양중급 및 건축사법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적용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	치법」
--------	-----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~ 5. 생략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- 7.~ 11. 생략
- ② 생략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-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

- 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 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 ② ~ ③ 생략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2. 취득 ·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 외한다.
- ⑤ ~ ⑦ 생략

2	소관부서 	회 계 과
입	과 장	이 건 호
안	팀 장	김 은 화
자	담 당 자	주 정 호 (480-5072)